

의안번호	제 408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##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박우양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0년 4월 13일

#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우양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4월 13일  
발 의 자 : 박우양 · 임영은 · 박문희 · 이상식 ·  
이상정 · 이의영 의원(6인)

## 1. 제안 이유

- 도지사는 5년마다 동물복지률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은 물론 노인여가 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등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함.

## 2. 주요 내용

-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맹견의 정의 추가(안 제2조)
-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를 위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시행(안 제3조)
- 적정한 사육·관리를 위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(안 제4조의2)
- 노인여가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등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규정 신설(안 제9조)
-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의 추가(안 제11조)

## 3. 조례안 : 불 입

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입

## 5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축수산과와 협의완료

## 7. 입법예고 : 2020.3.31. ~ 2020.4.9.(10일간, 특이의견 없음)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맹견” 이란 도사견, 핏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.

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)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충청북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.

1.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
2. 동물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및 그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
3.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적정한 사육·관리)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

- 가.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,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.

- 나.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말아야 한다.
2.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
- 가. 사육·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올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가서 돌아다니지 않게 해야 한다.
- 나. 사육·관리하는 동물이 큰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로 인하여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다.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, 텔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.
- 라.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.

제9조를 제9조의2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맹견의 출입금지 등)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
4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

제11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: 50%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권한의 위임) 도지사는 동물의 효율적인 보호·관리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의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맹견” 이란 도사견, 핏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.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(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)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충청북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.</p> <p>1.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</p> <p>2. 동물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및 그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</p> <p>3.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</u>  ① ~ ④ (생 략)  &lt;신 설&gt;</p>	<p><u>제3조의2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</u> 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4조의2(적정한 사육·관리) 법 제1</u>  <u>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</u>  <u>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</u>  <u>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</u>  <u>준수사항</u></p> <p><u>가.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</u>  <u>있는 비닐봉지, 장갑 등을 휴</u>  <u>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</u>  <u>설물을 수거해야 한다.</u></p> <p><u>나.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</u>  <u>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</u>  <u>위를 방지하지 말아야 한다.</u></p> <p><u>2.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</u></p> <p><u>가. 사육·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</u>  <u>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가서</u>  <u>돌아다니지 않게 해야 한다.</u></p> <p><u>나. 사육·관리하는 동물이 큰</u>  <u>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로 인</u>  <u>하여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</u>  <u>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다.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, 텔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.</p> <p>라.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.</p> <p>제9조(맹견의 출입금지 등)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</li> <li>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</li> <li>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</li> <li>4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</li> <li>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</li> <li>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u>제9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</u> ① ~ ④ (생략)	<u>제9조의2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</u>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제11조(수수료)</u> 1. ~ 5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	<u>제11조(수수료)</u> 1. ~ 5. (현행과 같음)  <u>6.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: 50%</u>
<u>6.</u> (생략)	<u>7.</u> (현행과 같음)
<u>제12조(권한의 위임)</u> 도지사는 <u>동물의 효율적인 보호 · 관리 등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권한을 시장 · 군수에게 위임한다.</u>	<u>제12조(권한의 위임)</u> 도지사는 <u>동물의 효율적인 보호 · 관리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의 권한을 시장 · 군수에게 위임한다.</u>

## 관 계 법령

### □ 동물보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의2. “맹견”이란 도사견, 핏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.
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1.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
  - 가. 도로·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(이하 “유실·유기동물”이라 한다)
  - 나.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(이하 “피학대 동물”이라 한다)
3.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4. 동물학대 방지, 동물복지, 유실·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 윤리 등의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5.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·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

②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· 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 · 특별자치도 · 특별자치시(이하 “시 · 도”라 한다)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,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·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·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)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. 20.>

③ 시 ·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 ·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 ·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3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
4.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